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2661호

**도시관리계획(광진구 구의동 593-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3-1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2월 6일
서울특별시장

I. 열람기간: 2018. 12. 7 ~ 2018. 12. 20.

II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 사업팀(☎02-2133-4932)

III. 재열람 사유 : 건축물 용도계획(지정, 불허) 변경, 건축물 밀도계획(건축계획) 변경

IV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 설	광진구 구의동 593-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광진구 구의동 593-11번지	-	증) 916.2	916.2	-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

구 분	구 역 명	면 적(㎡)	결정사유	비 고
신 설	광진구 구의동 593-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916.2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(신설)하고자 함	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주거지역	합 계	916.2	-	916.2	100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916.2	감) 916.2	-	-	
	준주거지역	-	증) 916.2	916.2	100.0	

나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(%)	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기정	변경	
-	광진구 구의동 593-11번지	제2종 일반주거 지역	준주거 지역	916.2	200	400	•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역 - 제2종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•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

2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가구번호	획지번호	위 치	면적(㎡)	계획내용	비 고
-	-	광진구 구의동 593-11번지	916.2	단독개발 지정	

나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계획내용	결정사유
-	• 단독개발 지정 - 광진구 구의동 593-11번지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개발 지정
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지정용도(가)	• 공동주택(주거복합) 주1)	• 광진구 구의동593-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불허용도 (A)	•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단, 주거복합 제외) 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/ 안마시술소 •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격리병원, 요양병원 •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• 위락시설 •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단, 주유소 제외) • 장례식장	

주1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.

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결정사유
-	•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	•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(신설)하고자 함

나.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

■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계획내용	비고
건폐율	• 60% 이하	• 광진구 구의동593-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용적률	• 기본용적률 : 400% 이하 • 상한용적률 : 법정용적률(500%) 이하	
최고높이	• 48m 이하	

주 : 상한용적률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하여 적용함

■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	결정(변경)사유
-	용적률	• 기본용적률 : 400% 이하 • 상한용적률 : 법정용적률(500%) 이하	•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적용함
	최고높이	• 48m 이하	•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도시·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교자 함

다. 용적률 적용(의무사항)

사업조건 항목		적용기준	계획내용	완화 내용	비 고
공공 기여율	공공시설 등 설치·제공 비율	공공기여율 15%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설치 및 제공	-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: 231.40㎡ (25.26%) - 231.40㎡(25.26%) ≥ 229.19㎡(25.02%) - 공공기여율 : 229.19㎡(25.02%) - 137.43㎡ + 91.76㎡ = 229.19㎡(25.02%)	기본 용적률 400% 부여	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(광진구 구의동 593-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)
건축물 용도구분	비주거비율	15% 미만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	비주거비율 14.28%(649.90㎡) - 용적률 기준		
주택 건설 비중	주택규모	- 공공임대주택 - 전용 45㎡이하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- 전용 60㎡이하	- 주거 : 비주거 = 3,900.84㎡(85.72%) : 649.90㎡(14.28%) - 비주거비율 15% 미만(용적률 기준) - 공공임대 : 공공지원민간임대 = 29.50% : 70.50% (28세대) (70세대) - 공공임대주택 : 전용 15.13㎡, 31.13㎡, 31.92㎡ 계획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: 전용 15.13㎡, 31.13㎡, 31.92㎡ 계획		
건축물 형태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	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 물 중 2가지 이상 목 적으로 이행	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		
주민공동 이용시설	커뮤니티 시설	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㎡ 이상의 주 민커뮤니티시설 설치	지상 2층에 100.64㎡ 계획(북카페)		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1 준용

※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,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~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한다.

라. 공공기여계획

구 분	기본용적률	공공기여율	계획내용	비 고
제2종일반 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	400%	- 기본공공기여율 : 대지면적의 15% 이상 - 137.43㎡(15.0%) - 추가공공기여율 :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 적률 50%에 해당하는 세대의 대지지분 - 91.76㎡(10.02%) 137.43㎡ + 91.76㎡ = 229.19㎡(25.02%)	231.40㎡ (25.26%)	광진구 구의동593-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
주1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1 적용

※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